

# I. 촛불집회에 대한 기본권 침해 유엔 진정

## ■ 개요

### 1. 정부의 극단적 정책실패

미국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협상 과정에서

- 국민의 건강권,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입장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고, 미국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였고
-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전무하였고
- 절차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다.

### 2. 국민의 초기 저항

이에 대한 MBC의 비판적인 보도를 계기로

-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 국민의 저항이 촛불집회의 형태로 분출되었고
- 처음에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제가
- 국민의 각계각층과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 3. 정부의 초기 대응

정부는 초지일관 스스로의 정책실패를 부정하고

-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과 더불어
- 정부협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괴담”으로 매도하고
- 국민의 저항에 “배후세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불법폭력” 집회는 엄단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 “괴담” 유포자, “배후세력”, “불법폭력” 집회참가자에 대한 색출작업에 착수하였다.

### 4. 국민의 저항의 계속과 정부의 탄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도로 행진을 진행하는 등 그 저항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약 1,000명이 체포되고, 수천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5. 계속 중인 정부의 체계적인 탄압

정부는 미국정부와의 추가적인 논의를 한 직후부터

-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부 언론에 대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의 계기가 된 MBC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 정부친화적 언론에 대한 광고자제 요청글에 대하여 인터넷 매체에 삭제 명령을 내리고 정부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체포하는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 촛불집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1700개 NGO 구성된 대책회의의 주요 간부를 체포, 구속, 수배하고 대책회의 및 관련 NGO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하고
- 국민들의 저항인 촛불집회를 불순세력의 범죄로 규정하여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 대통령이 나서서 촛불집회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모는 발언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 6. 요청사항

-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할 확인해달라.
- 긴급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
- 방문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을 개시해달라.

## II.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 보고관 진정

### ■ 침해 내용

#### 1. 배경

##### 1) 광우병위험물질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올해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8일 그동안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으로 제한해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대폭완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월령 30개월 이상의 살코기는 물론 소의 뼈와 내장까지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수입금지 되었던 내장, 뼈 등을 모두 수입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월령과 수입부위를 엄격히 제한해 왔는데 취임한지 2달이 채 되지 않는 새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은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를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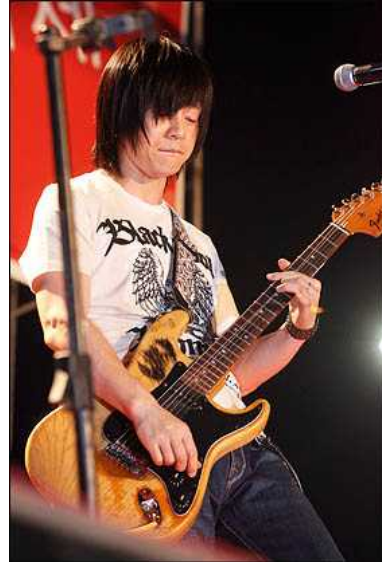
광우병 소고기 문제를 다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미국산 소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경찰의 시도와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제 연행·해산·구속, 구청의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현수막 강제 철거명령 등이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 2일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반대의사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그 범위가 넓고 방법도 다양하여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 2) 평화적인 촛불 시위 탄압과 표현물에 대한 제재

촛불집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토론공간인 아고라(agora.daum.net)에서 시작되었다. 네티즌들은 이슈청원 코너에 개설된 '미 쇠고기 졸속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등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각종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했고 이 서명에는 100여만명이 참여하였다. 촛불집회역시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토론과 제안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뤄진 경우이다. 5월 2일부터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초기 촛불집회는 주최하는 사람이 따로 없이 미친소닷넷(<http://www.michincow.net>)등의 광우병 쇠고기수입반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이 사회(미친소닷넷 운영자 백성균)를 보고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과 노래로 진행되었다. 이 집회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김장훈, 윤도현, 양희은, 이승환)들도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발언하고 노래하기도 할 만큼 평화롭고 자율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 거리를 가득메운 촛불시위 참가자



▲ 촛불집회에서 노래하는 가수 윤도현 (2008.5.17 청계광장)

촛불집회는 서울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 초기인 5월 3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기 시작해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외 교포들도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오클랜드(뉴질랜드)등지에서 국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 6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촛불집회

이는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못한 일반대중이 집회나 시위같은 집단적 행동을 통해 스스로 의사표현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현하는 길을 확보한 전형적인 ‘정치적 민주적 기본권’의 표현으로 시민과 국가의 의사소통과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폭력적인 해산과 연행, 수배를 지속하고 있다. 더구나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글이 하루에 수천건씩 올려지는 등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소통과 의사표현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광우병 괴

담'이라 폄하하며 검찰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우병과 촛불집회에 대해 왜곡보도를 하는 일간지에 대해 시작된 불매운동을 겨냥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등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약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하는 기관 또한 다양하여 경찰, 검찰, 구청, 서울시청, 교육인적자원부,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 부처들과 지자체 까지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촛불시위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는 2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매 집회때마다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까지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온오프라인을 넘는 표현의 자유 침해는 다양하고 심각한 수위에 도달해 있다. 현재 한국에는 촛불집회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조사관이 방한하여 침해상황을 조사 중이다.

'촛불집회'는 집회 참가자들이 손에 참가자들의 의견이 들어지기를 염원하는 촛불을 들기 때문에 '촛불 집회'라 부른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한 손에 촛불을 한 손에는 피켓을 들고 참가한다. 참가자들이 폭력을 위한 무기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촛불집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 애기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부부들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참가자들은 경찰이 집회해산을 위해 사용하는 물대포를 방어하기 위한 우비나 우산을 준비하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 등을 준비해서 나온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집회를 유지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한다. 아래 그림은 원광대 의대, 인터넷 동호회등의 후원을 받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집회장에서 나눠준 유인물로 집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안내한 것이다. 제목은 "아름다운 촛불 문화제를 위한 나의 작은 노력"이다. 부제로 비폭력, 질서지키기, 청결한 집회, 시민의식 이라 써 있다. 준비물로는 깔고 앉을 만한 것, 우비, 쓰레기담을 봉투, 피켓, 촛불, 마스크, 디지털 카메라 등이 있다.



# 아름다운 촛불 문화제를 위한 나의 작은 노력

- 비폭력
- 질서 지키기
- 정결한 정회
- 선진 시민의식

<http://susuhan.egloos.com/1765723>



\*이 캐릭터는 원광의대 Medic팀, 가너린 소녀들, medwon.egloos.com에서 후원 해 주신 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위도중 일어난 폭력적인 상황은 무척 예외적인데 이 경우 역시 경찰의 폭력에 대응하는 도중 발생한다. 예를 들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전경버스를 이용해 도로를 원천봉쇄한 경우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빈 버스를 끌어내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경찰버스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 왕복16차선으로 서울에서 제일 넓은 도로인



△ 청와대로 가는 행진이 가로막히자 집회참가자들은 빈 경찰

버

세종로를 가로질러 경찰버스를 세워놓아 시민들의 행진이 가로 막혔다.

스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 3)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인권침해

최소 수백명에서 최대 수십만명이 참가하는 규모의 촛불집회가 2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찰(경찰청장 어청수)은 이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집회와 관련된 6명1)을 수배하고 3명2)을 구속했다. 또한 집회에서 연행된 이는 모두8명에 이른다.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류를 근거하는데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몰 후

1)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용진(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광일(다함께 운영위원), 백은종(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부대표), 백성균(미친소닷넷 운영자), 김동규(진보연대 정책국장)

2)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윤희숙(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황순원(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집회 금지, 시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80db이상의 소음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 무엇보다도 신고제이면서도 경찰청장이 집회에 대해 금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실제 경찰이 임의적으로 ‘교통소통이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하기도 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 집회 주최자가 경찰에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는 집회개최시 안전한 집회 진행을 위해 경찰과 주최측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미신고의 경우,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행위를 형벌로써 다스리는 등 과도한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촛불집회에는 중고등학생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과 학생, 주부, 직장인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집회는 인터넷 상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퇴근 후인 저녁 7시, 장소는 시내 한복판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렇게 시작된 집회의 특성상 집시법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2. 침해 사례

### 1) 집회와 관계된 침해

#### - 평화시위에도 불법집회 규정

촛불시위가 시작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은 줄곧 집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현해 왔다. 5월 2일과 3일 두 번의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지고 난 직후인 5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촛불집회가 단순 문화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집회 성격이 강해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소환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촛불집회가 앞으로 더 열릴 것으로 보고, 5일 향후 집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대응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촛불집회가 미신고, 일몰후 집회 등의 이유를 들어 집시법 위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와 참가자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연행된 사람은 천여명을 넘어서고 구속된 숫자는 모두 8명이다.

#### - 행진을 원천봉쇄

보통 하고, 퇴근 후 저녁 7시쯤 시작되는 촛불집회는 2시간쯤 광장에 앉아 자유발언, 공연등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하고 집회 이후에는 이후 서울시내를 행진하기도 한다. 경찰은 늘 전경과 버스를 동원하여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차단하고 있지 않은 다른 도로들을 이용하여 청와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진이 이루어진다. 시위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 시위대는 경찰버스로 차단된 도로에 앉아 노래를 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등의 일을 하며 시위를 이어간다. 경찰의 해산을 위한 강제 진압이 없는 날은 시위대는 아침 출근시간이 가까워 지면 시위장소를 청소하고 스스로 해산을 한다. (청소사진)

#### - 폭력적인 해산작전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경찰의 해산작전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물대포를 쏘거나 시위대의 얼굴 정면에 소화기를 뿌리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아령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해산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를 손에 잡히는 대로 폭행하기도 한다. 심지어 경찰의 폭행을 피해 숨은 여학생을 다시 끌어내

어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물대포 동영상 <http://kr.youtube.com/watch?v=B4cLO5qls0Q&NR=1>

▶ 여대생 폭행 동영상 <http://kr.youtube.com/watch?v=SspSf5Zojpo>

연행에 저항하기 위해 팔을 끼고 대열을 지어 도로위에 누운 시위대를 경찰이 집단으로 곤봉과 방패로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6월 29일 폭력적인 연행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돕는 캠페인을 제안했던 이학영 YMCA사무총장은 거리에 누웠다가 팔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 6월 29일 누운 시민들을 경찰이 밟고 지나가고 있다



△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학영 YMCA사무총장

#### - 안전은 실종, 처벌이 목적

경찰은 물대포에 염료와 최루액을 넣어 뿌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옷에 색깔이 묻은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들은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집회를 축소,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구속 및 수배

대규모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자 170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였다. 대책회의는 집회기간중 연행, 부상 당하는 시민들의 상황 파악과 치료와 법률 대응, 집회 현장 진행, 후원금과 후원물품들을 모아 집회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대책회의 실무는 각 단체의 활동가들이 나눠 맡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대책회의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 중 3명을 미란다 원칙 미고지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하여 구속 하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구속과 체포영장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행진 방해를 위한 차벽, 컨테이너 벽 설치

87년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하게 만들었던 날을 기념하는 6월 10일 1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촛불집회에서는 정부의 광우병소 재협상을 요구가 자연스레 높아졌다. 대규모의 시위 참가가 예상되자 경찰이 서울시내에 가장 넓은 도로인 세종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하였다. 4t 무게의 컨테이너 박스를 2층으로 용접하고, 뒤편에 전경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그 뒤에 전경중대를 배치하는 '3중 방어선'을 구축했다. 컨테이너엔 윤희유의 일종인 '그리스'까지 발라 시민들이 오르지 못하게 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시위대의 평화로운 행진을 방해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물이다. 컨테이너 박스까지 동원하여 시위대의 행진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를 막은 경찰의 행



위는 안전한 집회를 보장하고 참여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 보다는 집회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드러나 있다. 촛불집회는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는 평화로운 형태의 시위임에도 시위대를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기 위한 장치를 여러겹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집회시위가 민주사회의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로 적극적으로 집회 시위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를 금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 6월 10일 오전부터 대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다. ▲경찰이 설치한 컨테이너에 뒤로 막혀 행진이 중단되었다.

#### - 학생 참가자에 대한 제재

수입된 소고기가 대량 급식에 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많다. UN아동권리협약 제15조는 아동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교육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였고 교사들을 집회에 참가<sup>3)</sup>시켜 소속 학교의 학생들이 있는지 감시하게 하였다. 심하게는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수업중에 찾아와 불러내 조사<sup>4)</sup>하기도 하였으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교복입은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묻는 등 개인정보취득 활동을 하였다.

#### - 시위 물품들 압수 및 관련자 구금

경찰은 집회의 진행을 막기위해 집회에 사용되는 기기들을 억류하는 일을 자행했다.

경찰이 6월 28일 오후 4시경 남산 1호터널 입구에서 시청으로 향하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방송 차량을 억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서울시청앞 광장에 집결해있던 촛불집회 참가자 1000여명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차량을 사방에서 에워싼 채 "이명박은 물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송차량은 시청까지 시민들의 에스코트를 받은채 도착할 수 있었다.

결국 경찰은 다음날인 6월 29일 오후 1시즈음 종로구 이화동에 있던 대책회의 발전 차량을 동대문 경찰서로 끌고 갔다. 같은날 오후 2시즈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음향업체에서 빌린 방송 차량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서울로 들어오던 중 도로에서 제지했다. 경찰은 영장제시도 없이 '상부지시'라는 말 만으로 방송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견인해 갔다.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 광

3) 5월 6일 집회에서는 교육부와 시교육청 공무원들과 일선 학교 교사 700여명이 학생들의 귀가를 중용했다.[서울신문] 2008-05-07 09면 총20면 사회

4) 5월 22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모군(17세)를 수업중 불러내어 촛불집회 참가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4일 이 사건이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경찰서장의 징계를 권고했다. 더불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교사가 경찰이 방문했다고 해서 수업 중 조사에 협조한 것도 인권침해라 하여 교사의 징계를 학교측에 권고했다.

장을 원천 봉쇄하면서 대책회의가 준비해 놓은 무대 차량을 끌어 갔다.

경찰은 방송차량 압류·견인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집회에 사용될 방송차량을 대역·운반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 집행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공안 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자행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량 압수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장 20여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경찰의 영장없는 사진 채증

촛불집회 전 기간 동안 경찰은 사진 채증을 전담하는 경찰을 배치하여 시위참가자의 얼굴을 일상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촬영은 시위가 평화롭거나 폭력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촬영당시 영장을 제시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보취득 활동이다. 참가자에 대한 사진 채증은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를 심리적으로 축소시키며 영향을 미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 - 집회 장소인 광장 접근 봉쇄

가장 최근인 7월 7일 서울시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인 서울시청앞 광장에 잔디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광장 사용을 금지 하였고 경찰 버스를 동원해 집회 참가자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였다. 광장은 공공재산으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관리의 책임을 질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광장을 계획에 없던 급작스런 잔디공사를 이유로 경찰력을 동원해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촛불집회가 열리던 서울광장을 7월 7일 경찰 버스를 이용해 봉쇄했다. <뉴스시스>

## 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 검찰 광우병 피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피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피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

다.<sup>5)</sup> 결국 검찰은 뚜렷한 괴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인터넷상의 표현물들에 대해 감시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였다.

#### -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촛불집회와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편향적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주요 일간지에 화가난 시민들은 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선, 동아, 중앙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는 광고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불매운동의 시작은 인터넷 토론코너(다음 아고라)에서 제안되어 시작되었다. 이는 외국에서 흔히 있는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7월 1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주를 겨냥한 인터넷 불매운동이 “사회 규범과 질서를 뛰어넘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시판 글 58건에 대해 영구삭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민간 독립심의기구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이런 기관이 광고 기업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단순히 올린 것까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결정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 더 나아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6월 20일 광고주 불매운동 등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고, 검찰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신뢰 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국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 불매운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소비자 주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기에 극히 폭력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개시 결정은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활발해진 광고 불매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 - 광고중단운동 관련 네티즌 20명에 대한 출국금지

네티즌의 광고중단운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 수사부장)은 7월 7일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 여 명을 이번 주에 소환하여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일에는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sup>6)</sup>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대상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고, 게다가 당사자의 고소 고발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의 형사처벌을 당연시하고 있다. 출국금지결정은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중단운동은 평범한 시민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결코 중대범죄도 아니고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아무 사정도 없다. 이는 네티즌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과잉수

5) 검찰은 최근 번지고 있는 ‘광우병 인터넷 괴담’ 등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폭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5월 7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임채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8-05-08 09면 총20면 사회

6)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협박전화를 걸어 광고주들을 압박하자는 ‘숙제’를 올리는 등 계속해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네티즌과 이를 관리 혹은 방조한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진 등이 출금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지난주부터 수사대상을 압축하면서 일부를 출금조치했고, 앞으로 출금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주 압박 네티즌 20여명 出禁” [서울신문] 2008-07-09 08면

사며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 광우병 소고기에 반대하는 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

6월 24일 관악구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위반한다며 광우병 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쓴 현수막을 내걸은 서점(서울대 앞 '그날이 오면')에 찾아와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미신고·무허가 광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법은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제21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의 현수막 제거 명령은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채 이루어진 졸속 단속으로 광우병 소고기 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광우병반대 운동이 광범위하게 정부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 - 피디수첩 검찰 수사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MBC TV 프로그램 'PD수첩'이 4월29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광우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프로그램을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MBC 프로듀서 및 기자, 언론노조 등 언론 종사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찰은 부당한 수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다는 비판이 높다.

### 3) 기타

#### - 전국 읍면동장 대상 정부정책 홍보교육

6월 30일 오전 정부(행정안전부)는 '전국 읍·면·동장 국정 현안설명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는 전체 읍·면·동장 3504명 가운데 90%가 훌쩍 넘는 3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정부정책을 교육하기 위해 전국의 읍·면·동장을 소집한 것은 20년전 국사독재 정권이후 처음이다. 읍·면·동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20년 전이나 했던 관제 교육을 하고 정책 홍보를 당부하는 국민이 다양한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온갖 제도를 통해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 4) 기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도록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실익이 없는 한미간의 추가협상이 조치로 이루어지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없이 오히려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탄압하자 집회 초기 전면재협상,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의 구호들이 점점 다양한 요구들로 발전하였다.

1.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폭력 진압을 명령한 경찰총장에 대한 해임촉구
2.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등 정부정책이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가중시킬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

3. 장기간의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저항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 등 이다.

[경찰폭력 사진 모음]

<http://blog.naver.com/huruba?Redirect=Log&logNo=90031765193>

<http://boom.naver.com/BoardRead.nhn?categoryId=1&articleNum=20080629180255010>



### Ⅲ. ‘자의적 구금’에 대한 특별 보고관 진정

2008년 4월 18일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협상 타결 발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국민적인 촛불집회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십 만 명이 참석하여 촛불을 들면서 평화적으로 서울 청계천 광장과 시청에 모여서 집회를 한 후에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 직장인들, 주부와 다수의 네티즌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찰은 집회 초부터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평화적인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하였으며,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대중화되면서 시가지 행진을 이유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5월 31일 토요일 집회를 기점으로 법적절차나 체포요건도 갖추지 않고 무차별 연행을 시작하였으며, 시민들이 단순하게 인도에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경찰책임자가 갑작스럽게 해산명령을 발하고 그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해산명령불응으로 체포, 연행하였으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집회 미참석자도 연행하며 심지어는 14세의 중학생도 체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제연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연행이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법적구금 가능시간인 48시간 이내를 대부분 채워 장기구금 이후 석방을 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무차별적인 연행소식을 듣고 달려간 법률가 NGO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가 현장 경찰책임자에게 무차별적 연행에 항의하자 그 변호사마저 현행범인으로 체포, 구금하였다.

이에 한국의 인권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6월 27일)을 하였으며,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라 함)와 민변에서는 6월 19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어청수 경찰청장 및 관련자들을 형사고소, 고발하였다

#### 1.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 배재우(남, 77년 2월 22일생, 잡지사근무)은 6. 1. 08시경 안국동사거리 희망제작서 건물 앞 인도에서 시위대와는 5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 시위를 지켜보고 있던 중에 전경 1개 중대 병력이 인근 주민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3명의 전경에 둘러싸여 연행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팔을 쥐이고 곤봉으로 팔뚝을 가격당하고 전경이 뒷목을 심하게 내리눌러 근육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배씨는 연행 당시 전경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지도 못하였고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하였다.

- 나승원(남, 80년 4월 8일생, 대학생)은 6. 1. 집회현장을 떠나 지하철을 타려고 인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달려와 체포하였다.

- 최준석(남, 14세, 중학생)은 6. 8. 새벽 5시경 교보빌딩 앞 인도에서 서 있던 중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휘두르며 인도로 몰려왔고 성명불상 전경으로부터 방패로 뒷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박송태(남, 69년 2월 24일생, 프리랜서)은 모자를 사러 나왔다가 시위행렬을 만나 시위대를 따라간 후 집에 가기 위해 시청역으로 가는 도중 경찰의 갑작스런 포위와 진압으로 코너에 몰린 후 연행되었다.

- 정지훈(남, 81년 11월 27일생, 회사원)은 시위를 구경하다가 인도를 통해 귀가중 인도에서 폭력진

압되는 시민을 목격하고 제지 후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가 연행되었다.

## 2.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까지 무차별 연행

- 특히, 2008. 6. 25. 경찰은 경북궁역 근처에서 삼삼오오 인도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갑작스레 둘러싸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하였다.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루어진다는 시민들의 연락을 받고 18:40경 현장에 갔던 민변 소속 이재정(여, 74년 8월 2일생)변호사 강영구(여, 77년 8월 6일생) 변호사는 시민 20여명이 전경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인도에 있는 시민을 왜 연행하느냐”며 항의하였는데, 경찰은 이들 변호사마저 연행하여 강북경찰서에 24시간 이상 구금하였다.

## 3. 미란다 원칙 불고지

- 김수용(남, 86년 7월 24일생, 무직)은 6. 1. 7시30분경 안국동 4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고지받았다.
- 김종하(남, 87년 10월 17일생, 대학생)은 5. 27. 밤 23시 40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인도)에서 전경으로부터 갑자기 포위된 후 해산명령이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되고 체포이유를 따져 물어도 경찰은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가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음을 항의하자 그때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
- 나승원(남, 80년 4월 8일생, 대학생)은 6. 1. 7시 30분경 안국동 사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그 이전에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박송태(남, 69년 2월 24일생, 프리랜서)은 5. 28. 시청광장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연행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도중 고지받았다.
- 배재우(남, 77년 2월 22일생, 잡지사근무)은 6. 1. 8시경 안국동사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그 이전에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정지훈(남, 81년 11월 27일생, 회사원)은 인도에서 연행되었고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고지받았다.
- 홍경수(남, 69년 7월 7일, 시간제 노동자)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으나 변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 김태성(남, 72년 1월 6일생, 무직)은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경찰 호송차 안에서 미란다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에게 2번이나 물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조용해 하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고지를 받았다.

## 4. 현행범 체포 후 장기구금

- 김수용(남, 86년 7월 24일생, 무직)은 6. 1. 7시30분경 안국동 4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된 후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6. 3. 00:30경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
- 나승원(남, 80년 4월 8일생, 대학생)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하고 만 41시간만에 석방하였다.
- 박송태(남, 69년 2월 24일생, 프리랜서)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5시간만에 석방하였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로서의 개

인적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

- 배재우(남, 77년 2월 22일생, 잡지사근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0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에서도 무고하게 연행된 사실 및 프로젝트 신청작업의 급박한 상황을 담당형사에게 호소하였으나 즉시 석방되지 않았다.

## IV. ‘인권옹호자’를 위한 특별 보고관 진정

2008년 4월 18일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협상 타결 발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국민적인 촛불집회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십 만 명이 참석하여 촛불을 들면서 평화적으로 서울 청계천 광장과 시청에 모여서 집회를 한 후에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 직장인들, 주부와 다수의 네티즌들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맞서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결성된 광우병대책회의(1,800여 단체로 구성)는 이러한 자발적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비폭력·평화적인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자들을 표적 연행하여 구금하였다. 또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변호사를 가혹하여 중퇴에 빠뜨리기도 했다.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준형 변호사 사례

민변 소속 이준형 변호사(남, 41세)는 6월 26일 새벽 광화문 사거리-서대문 방향의 도로 위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 입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였다. 이날 새벽 1시경부터 경찰이 물대포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두에 서서 경찰을 막고 있었다. 새벽 1시 50분경 물대포가 잠시 멈추고 소강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45도 각도로 세우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여 시민들이 겁을 먹거나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뒤로 돌아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이준형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천천히’라고 외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성명불상 전경이 방패를 세워서 들고 이준형 변호사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이준형 변호사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변호사는 그 때부터 서울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기억을 상실하였고, 두개골이 부서져서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내부출혈이 발생하였다. 이마쪽 뼈와 눈 주위의 뼈가 부서졌고, 이마와 인중이 찢어져 14바늘을 꿰매었다. 이변호사를 치료한 의사는 오염된 공기가 두개골로 들어갔을 경우 뇌손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였다.

### 2. 민변 인권침해 감시단 소속 이재정, 김광중, 강영구 변호사 피해사례

민변 소속 이재정(여, 33세), 김광중 변호사(남, 32세)는 2008. 6. 1. 새벽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으로 활동하였고 이날 새벽 4시경 경복궁 근처에서 경찰이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일렬로 서 있었다. 당시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띠를 상체에 두르고 있었고, 인권침해 감시단 변호사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경찰특공대에 의하여 강제연행당한 후 6시간 여 동안 구금당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의 특공대들은 김광중 변호사의 팔을 꺾고, 이재정 변호사의 좌측 가슴상단의 어깨부위를 방패로 가격하였다.

### 3.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윤희숙, 황순원 사례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안진걸(남, 35세)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여, 32세)은 6월 25일 오후 4시경, 경복궁역 앞에서 장관고시 철회

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강제연행 되었다.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순원(남, 32세)은 7월 2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들이 소속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800여개의 노동, 환경, 소비자, 지역 등 각종 단체들이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조직된 한시적 조직 협의체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촛불시위를 이끌었다. 안진걸은 조직팀의 실무자로서 경찰들과 연락하여 촛불문화제 장소, 시간 등을 협의하는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다. 윤희숙, 황순원 역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파견되어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였다. 연행 당시 안진걸은 열두 살 초등학생부터 여든하나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되는 걸 보면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안진걸은 목을 심하게 졸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사진참조) 이들은 현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밖에도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비롯한 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되어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 연행장면

#### 4. YMCA 이학영 사무총장 사례

2008. 6. 29. 00:30경 한국YMCA 남자 행동단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100여명이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거리에 드러누워 폭력 진압에 항의했다. 잠시 후,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 1명이 전투경찰들을 향해 “무엇하나,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전투경찰들 약 100여명 정도가 드러누워 있는 시민들을 방패로 쥘고 곤봉으로 때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나 배 부위를 균화받고 짓이기면서 밟고 지나갔다. 시민들이 “밟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하였으나 전투경찰은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갔고 이러한 진압으로 YMCA 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9명이 우측 귀 연골 손상, 팔 골절,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들 중 2명은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 경찰에 폭행당하고 병원에 입원중인 이학영 ymca사무총장



## 5.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침해사례

### 1). 2008. 6. 2. 접견교통권 침해(오윤식 변호사)

민변 소속 오윤식 변호사(남, 36세)는 2008. 6. 1.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5:30경까지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이던 중, 6. 2. 03:00경 세종로 일대 이순신 동상 일대에서 경찰의 시위에 대한 해산 및 체포작전이 시작되어 시위대가 현행범체포되자,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전경의 시위참가자 폭행을 감시하고 연행된 피의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연행된 피의자를 뒤따라 이순신 동상으로부터 약200미터를 광화문 방향으로 차도를 이동하여 전경 호송차까지 갔다. 오윤식 변호사는 바로 전경호송차 중앙 문 앞에서 현장지휘자로 보이는 성명불상 경찰관(사복차림)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거죠? 변호사인데 피의자들과 접견하겠습니다’고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경찰관은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당시 오윤식 변호사는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가슴띠를 두르고 검은색 샘소나이트 가방을 들고 넥타이를 맨 양복차림이었으므로, 외관상 변호사임을 알 수 있었다). 오윤식 변호사가 다시 지휘자에게 변호사신분증을 꺼내보이며 ‘저는 변호사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들과 접견하겠습니다’고 하며 접견을 요청하자, 경찰관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몇몇 경찰관들이 ‘접견신청서를 가져와라’, 지금은 안되니 나중에 시켜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접견을 거부하였다. 이에 오변호사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시기적으로 제한 받으니까’라며 강하게 항의하며 다시 접견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래도 접견이 허용되지 않자 전경호송차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몇몇 경찰관들(모두 사복차림)이 오윤식 회원의 팔과 허리 등을 잡고 들어내다시피 하여 전경 호송차 밖으로 강제로 내쫓았다.

### 2) 2008. 6. 7. 접견교통권 침해(김종웅 변호사)

민변 소속 김종웅 변호사는 2008. 6. 6. 20:00경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수행하던 중, 6. 7. 02:00경 연행 움직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윤식 변호사와 함께 새문안교회 근처로 이동하여, 성명불상 시위참가자가 연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김종웅 변호사는 현장지휘자에게 변호사신분증을 꺼내보이며, ‘저는 김종웅 변호사입니다. 방금 연행된 피의자와 접견하겠습니다. 연행된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세요’라며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지휘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김변호사는 ‘현장지휘자 없습니까? 저는 김종웅 변호사입니다. 연행된 피의자를 접견하겠습니다’며 약 20여분간 목이 터져라 수차례 접견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당시 상황은 오윤식 변호사와 현장기자가 목격하고 촬영하였다). 김변호사는 한참만에 간신히 전경 사이를 뚫고 현장지휘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고, 현장지휘자에게 방금 연행된 피의자가 간 곳을 물어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오윤식 회원에게 종로경찰서로 접견을 가도록 연락하였다. 오윤식 변호사가 연락을 받고 종로경찰서로 갔으나, 그곳 담당형사는 ‘시위하다가 종로서로 연행된 사람은 없어요. 원래 종로서로 시위 연행자들이 오지 않아요. 시위연행자들이 연행되면 시위대가 종로서를 타격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연행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새문안교회 현장지휘자가 김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 3) 2008. 6. 1. 접견교통권 침해(이재정 변호사)

2008. 5. 31. 20:00부터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던 이재정 변호사는 2008. 6. 1. 05:30경 시민과 시위대진압중인 경찰사이에서 대치상황을 조절하고 경찰에 무리한 진압정지를 설득하던 중 살수차가 동원, 직격살수, 방패, 곤봉 등으로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이 있던 상황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 중인

변호사임을 표시하는 조끼를 입고 있었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중인 변호사라는 것을 여러번 알렸음에도 연행되어 용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용산경찰서에는 이재정 변호사외에도 함께 연행된 김광중 변호사와 10명의 연행자가 더 있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같은 경찰서 4층에 있는 지능팀에서 6명의 피의자 접견을 제안하여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그런데,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사무를 집행중인 성명불상의 팀장 책상 바로 앞 테이블에서의 접견만 허용하였다. 이에 이재정 변호사는 접견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거나 성명불상의 팀장이 가청거리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접견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경찰관 등에 의한 접견내용 청취, 녹취를 통한 부당한 침해를 금하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위법하다.

#### 4) 6. 25. 접견교통권 침해(설창일 변호사)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설창일 변호사는 2008. 6. 25. 02:00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 뒤쪽에 시민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력을 위해 그 곳에 이르렀는바, 동대문경찰서라는 표식을 부착한 경찰버스에 8명의 시민이 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경찰버스에 탑승해 있는 경찰들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접견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경찰들은 위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시민들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설창일 변호사는 2008. 6. 25. 19:00경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시민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이르렀는바, 이미 약 6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경찰 수명에 의해 둘러싸인 채 감금되어 있었는데, 위 6명은 변호사들이 조력을 위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고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본 변호인이 경찰관들 사이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2008. 6. 25. 19:30경 경복궁역 근처에서 체포되어 성북경찰차 소속 경찰버스로 인치되는 시민들을 접견하기 위해 버스 차에 오르려고 하자, 본 변호인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접견할 수 없고 이후 경찰서로 찾아서 접견하라며 본 변호인을 완력으로 차에서 하차하게 하였다.

## V. ‘고문’ 특별 보고관 진정

한국은 1995년도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다. 아직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아직 가입하고 있는 않다. 하지만 13년 동안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는 보기 힘든 경찰폭력이 행해지고 있어 진정하려 한다. 특히 이번 진정으로 정부가 폭력적 진압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5월 2일 촛불집회는 광우병 위험 미국 수입 쇠고기를 급식으로 인해 먹을 수밖에 없는 학생의 신분인 10대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청계과장에서 열렸던 건강권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정부의 태도가 변함없자 5월 24일부터 거리 행진을 하였고 거리행진을 막고자하는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였다. 특히 5월 31일과 6월 1일, 6월 7일과 10일, 11일에는 경찰폭력이 단지 거리행진을 막는 걸 넘어서 시위대에게 공포를 가해 정치적 의견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극심한 고통을 주어 다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국내법을 어기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고문방지협약 1조에 나타난 고문의 정의는 “고문이라는 용어는 어떤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개인이나 제3자가 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하기 위하여,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고통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촛불집회에 나타난 폭력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질러졌다. 이

또한 그 행위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시민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정부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해산하면서 많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지휘관이 ‘때려도 된다’는 명령을 쉽게 하고 있으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1000명을 다 잡아들이고 싶었다’, ‘불법시위를 엄담하겠다’며 ‘최루액을 사용하겠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주체적 요소, 객체적 요소, 고의적 요소가 다 충족되는 고문의 형태로 집회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얘기하듯이 불법시위라는 것이 폭력 시위는 아니며 불법시위라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경찰장비 규정에 나와 있는 방패와 곤봉 사용, 물대포 사용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더구나 소화기의 경우는 사용규정도 나와 있지 않은 임의적 규정으로 다수 시민의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미란다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변호사 접견을 막는 불법행위도 많으며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경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기도 하는 등 국내법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사례는 신문에 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매우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고문의 유형은 크게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연행조사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나누었다. 동영

상도 함께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 1. 집회현장

### 1) 집단 폭행 및 무리한 진압 사례

#### - 여대생, 여성에 대한 집단폭행

• 이나래(여, ) 5월 31일 밤 ~ 6월 1일 새벽: 이양은 지난 1일 시위도중 전경들에 둘러싸여 호송차 바로 앞에 넘어졌고 이를 옆에 있던 전경이 군화발로 머리를 밟고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차는 장면으로 공분을 샀다. 견디다 못한 이양은 호송차 밑으로 굴러들어가 폭행을 잠시 피함.

그러나 차 엔진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올수 밖에 없었고 나온후 전경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고 직접 증언함. 이양은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하였고 가해자 전경은 사법처리할 것이라 하였으나 이양은 전경개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린 지휘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함. 이나래양의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은 MBC 등을 통해 공중파와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됨.

• 장00( ) 2008. 6. 29. 오전 0시 30분경 서울 태평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었음.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경찰차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갑자기 수백명의 전경들이 차단벽인 경찰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진압하기 시작함. 일순간 밀리게 된 집회, 시위자들이 시정방향으로 도망치는 아비규환의 와중에서, 피해여성은 도망가다가 도로에서 순간 넘어지게 됨. 그러자, 전경 5-6명이 달려들어 진압봉으로 수차례 걸쳐 온몸을 구타함. 피해여성은 경찰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굴렀지만 구타는 계속됨. 피해여성은 폭행상황이 지속되면 죽을수도 있다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폭행을 휘두르는 전경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으나 전경들은 계속 폭행하였고, 급기야 피해자는 반 실신 상태에 이룸.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됨.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골절)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있는 등 전신부상을 입음

• 신혜숙(여, 1953년 10월생 주부) 5월 31일 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왼쪽에서 전경이 팔목을 잡고 꺾어서 의료지원단을 통해 치료를 받고 부목을 대었음.

#### - 전경에 의한 손가락이 절단

• 조 (남, , ) 6. 26. 오전 1시 30분경 금강제화 빌딩 앞에서 관보게시에 항의하며 시위에 참가함. 그런데 위 시각 무렵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정차해둔 전경버스 3개가 빠지면서 전경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됨. 대치 과정에서 전경 2명이 앞서서 나왔고, 사실상 시민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함. 고소인은 어린 전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경 가까이에 있었는데 긴장한 2명의 전경 중 1명이 사실상 포위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고소인을 발로 걷어차 고소인이 넘어짐. 고소인은 폭행하는 전경을 피할 목적으로 손을 전경을 향해 휘둘렀는데 전경이 고소인의 손가락을 힘차게 물었음. 이로 인해 고소인은 왼손 중지의 첫 번째 마디의 3/4정도가 절단된 상태임. 고소인은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절단된 손가락이 현장에 방치되어 결국 봉합수술을 받지 못하고 절단된 상태로 앞으로 살아야 할 상황임.

#### - 시위 해산 및 연행과정에서 폭행 및 집단 폭행

·입호경 (남, 870110, 대학생, 현장에서 연극) 6월 1일 : 새벽 경찰의 시위 진압이 끝날 때 즈음, 동소문각에서 안국역 방면 언덕배기 대로에서 노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정지해 있다가 경찰간부의 ‘하차시켜’란 지시로 5~6명 정도의 전경에게 끌어내려져 100미터 정도 끌려가며 폭행당함. 이 과정에서 “왜 개기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연행버스를 찾아 태우려했으나 가까운데 없었던 듯, 인도에 던져놓은 후 전경이 욱하며 얼굴을 군화발로 밟고 사라짐. 이로 인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나중에 다시 찾은 오토바이도 파손된 것을 확인 .

• 이재영 (남, 19, 인권활동가) 5월 26일 새벽 1시 10분, 신촌에서 1차 거리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해산하고 연행하기 위해 경고방송도 없이 전경들이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함. “개새끼야 너 일루와!”, “다 필요 없어, 머리채 잡아!”, “머리카락 잡아!”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스크럼을 짜고 있던 대여섯 명 가량의 시위대의 머리채를 잡고 어깨나 팔을 폭행하며 연행을 시도. 시위대 연행을 인도에서 보고 있는데 연행되면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이기도 함. 서로 넘어지는 가운데 여성 한 명이 전경에 깔리기도 함.

• 허원상 (남, 21세, 대학생) 6월 1일 새벽 2시 5분 경 효자동 인도에서 전투경찰과 대치중에 주먹으로 폭행당하고 수차례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고, 진투화로 정강이를 가격당함. 4시반경 효자동 도로에서 특공대로 보이는 경찰에게 방패와 곤봉으로 맞고 머리를 잡힌 채 연행하려했으나 시위대가 잡아당겨 연행은 되지 않음.

·고광연(남, ) 010-2559-0366 6월 2일 : 새벽 12시에서 1시경 시민들과 전경들이 모두 흥분해서 자꾸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맨 앞줄에 있던 사람들과 스크럼을 짜고 비폭력을 외치면서 충돌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경 쪽에서 머리채를 잡아 전경 한가운데로 끌어낸 다음, 집단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머리, 복부, 옆구리, 엉덩이, 발과 무릎 등 온몸을 맞았으며 계속된 구타에 지쳐 쓰러져서 전혀 저항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머리와 손 및 몸 곳곳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 비폭력 연좌시위하던 사람들에 대한 폭행

·YMCA 이학영 사무총장 2008. 6. 29. 00:30경 한국YMCA 농자 행동단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100여명이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거리에 드러누워 폭력 진압에 항의함. 잠시후,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 1명이 전투경찰들을 향해 “무엇하냐,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전투경찰들 약 100여명 정도가 드러누워 있는 시민들을 방패로 쥘고 곤봉으로 때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배 부위를 군화발로 짓이기면서 밟고 지나감. 시민들이 “밟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하였으나 전투경찰은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갔고 이러한 진압으로 YMCA 연맹 이학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9명이 우측 귀 연골 손상, 팔 골절,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들 중 2명은 현재 입원 치료중임

## 2) 거리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차량 돌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성추행

### • 범희대(여)

5월 30일밤 시청앞 도로에서 시위하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전경차가 주행함. 그 과정에서 시민 한명이 차에 치여 넘어짐. 차량을 운전하던 전경이 나오지 않아 이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차를 둘러쌘.



5월 31일 새벽 2시경 교통사고를 낸 전경버스가 제대로 된 처리와 사과없이 이동하려하여 버스를 둘러싸자, 시위대를 밀어내기 위해 전경이 들어와 폭력행사. 여성경찰관이 투입되지 않아 여성 두 명을 끌어내기 위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이 일어나 항의했음.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자 방패로 인도 쪽으로 밀어냄.

• 이승택( 남, 43, 목수 ) 6월 11일 아침 8시 50분경 전경이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전경들을 뒤로 빼고 교통순경들을 동원하고 차량 통행을 시도함. 도로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시위를 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차량이 통행하면 사고날 것이 분명하여 ‘차를 돌려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음. 교통순경은 차량을 통과시켰고 차가 주행하자 옆에 있던 교통경찰이 주행하는 곳으로 밀어 넘어졌음. 사고로 인해 머리와 허리를 다쳐 온몸 타박상으로 3주 진단 받음.

### 3) 응급의료 중인 의사를 경찰이 폭행함

• 정모씨( ) 2008. 6. 29. 02:00경 고소인은 의료봉사 활동중이었음. 피해자는 시위대에 의하여 끌려나온 신원불상의 전경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5명 정도의 동료들과 같이 시위대를 제지하고 부상당한 전경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기도 함. 그런데 갑자기 뛰어 온 전경이 고소인을 둘러싼 후 고소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의 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방패와 전투화 등으로 가격하여 찰과상, 경추염좌, 뇌부종, 뇌진탕, 전신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응급의료법 제 12조는 응급의료조치를 하고 있는 자를 방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60조는 동법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혐의로 고소할 것임

### 4) 경찰 장비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거나 규정 없이 사용한 피해

#### - 방패를 이용한 시위대 가격

• 윤덕찬(남, 33세, 연구원) 6월 1일 세종로에서 새벽 1시경 진압과정에서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코를 가격당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짐. 그 과정에서 안경은 벗겨져 분실되었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전경들은 몸을 밟고 지나쳐가기도 함. 10여분 후 의료진에 의해 어떤 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삼성병원으로 이송되어 코뼈 골절 진단을 받음.

• 선명엽 (남, 19세, 대학생) 6월 1일 아침 전경이 방패로 밀고 들어와서 손으로 방어했는데 경찰이 방패로 내리찍음.

#### - 살수차를 이용한 폭력

• 온승태 (남, 20, 학생) 6월 1일 아침 경복궁 근처의 란 스튜디오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내기 위해 2~3분 간격으로 반복적인 물대포를 쏘아대 저체온증, 쇼크가 음.

### 5) 인도 연행 및 항의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 및 강제 연행

• 신운수 ( 남, 010-3479-8946) 5월 30일 밤 시청앞 도로에서 시위하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전경차가 주행함. 그 과정에서 시민 한명이 차에 치여 넘어짐. 차량을 운전하던 전경이 나오지 않아 이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차를 둘러쌌. 5월 31일 새벽 2시경 교통사고를 낸 전경버스가 제대로 된 처리와 사과 없이 이동하려하여 버스를 둘러싸자, 시위대를 밀어내기 위해 전경이 들어와 폭력행사. 전경버스를 못가도록 했는데 전경들이 몰려와 군화발로 등을 맞고 얼굴을 손으로 압박해 얼굴이 다치고

착용하던 렌즈 하나가 빠짐.

- 유석원 (남, 1989년생, 대학생) 6월 1일 새벽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사람들을 인도로 몰아붙이고 전경 여러 명이 일부 시민을 둘러싸 폭행하며 연행하는 등, 인도에 있던 시민을 연행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횡단보도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연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안국빌딩 등 인근 건물 안으로 피신한 사람을 쫓아 들어가기도 함.

- 이지민 (여, 20,무직)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며 시청광장에 있었음. 갑자기 경찰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방패에 맞고 몸에 눌리는 압박을 당해 탈진함.

## 6)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발생

- 강민숙(여, 42, 무직) 5월 24일 :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당시 양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로 피해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경찰은 연행을 위해 손목을 잡아 당겼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여경들의 손을 물기 시작하자 경찰 중 한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김.

## 7)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발생

- 최준석 (남, 13세, 중학생 ) 6월 8일 새벽 5시경 세종로사거리 교보생명 빌딩 앞 인도에서 다수의 시민들과 13세의 아동 피해자가 서 있었음. 진압이 시작되면서 전경들이 방패를 휘두르면서 몰려왔고,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뒤돌아서서 막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전경이 휘두르는 방패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아 졸도.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과 의료진이 아이가 다쳤다고 소리치며 아이를 둘러싸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전경들은 계속 방패를 휘두르며 앞으로 밀고 나가 시민들과 부상당한 피해자가 고립. 머리를 방패로 맞아 뇌진탕으로 4일간 입원함.

## 2. 연행, 조사 과정

### 1) 치료 요청 무시

- 김산 ( 남, 31, 인권활동가) 강서경찰서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가는 도중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팔을 꺾고 3명 이상이 붙어서 사무실로 끌려감.

### 2) 밤샘조사와 화장실 출입 통제

- 김하나 (여, 27, 인권활동가) 경북구역 근처에 인도를 가로막고 있던 전경들과 대치중 6월 1일 새벽 3시에 수서경찰서로 연행된 피해자는 아침 7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연행자도 마찬가지로 있었음

- 정소연( 여, 24, 인권활동가) 5월 27일 시청광장에서 집으로 보내주는줄 알았다가 불법연행되어 마포경찰서에 12시반경 도착함. 불법연행에 항의하며 진술거부를 함. 신원을 알려주지 않자 그러면 화장실도 갈수 없다며 3시간동안 화장실 출입을 통제함.

### 3) 불법 연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 김나영 (여, 30, 무직 ) 5월 27일 밤 11시 인도에서 미란다 고지도 없이 연행당함. 당일 연행자들

은 시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시청 광장을 지나 광화문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음. 그런데 갑자기 전경들이 시청광장 주변과 횡단보도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전경에 의해 포위된 상태가 됨. 전경들은 시민들을 몇 명씩 그룹으로 만들어 에워쌌고 광장 오른쪽에서 전경에 의해 둘러싸였던 다섯 명은 뒤쪽의 상황을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 경고방송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전경들이 길을 터 준 후 몇 명이 “집에 보내주는 것이냐”고 묻자 현장에 있던 전경은 “그렇다”고 대답. 그러나 두서너 명 씩 내보내면서 전경 버스로 연행함. 12시반경 마포경찰서에 도착. 피해자는 12명임

- 김산( 남, 31, 인권활동가) 5월 31일 낮에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에서 연행되면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함.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항의하자 근처의 형사가 머리는 잡지 말라고 전경을 제지하기도 함. 연행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함.

#### 4) 변호사 접견방해

- 김산( 남, 31, 인권활동가) 5월 31일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피해자는 오후 2시경 병원에 가고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포승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경찰관의 말에 변호사를 불러줄 것을 요구. 이에 형사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권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거부. 이에 항의하자 유치장 안의 모든 경찰이 유치장 밖으로 나가버림. 이에 30분마다 계속적으로 변호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였고, 오후 7시쯤에야 변호사를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5시 30분경에야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때 접견을 요청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음이 알려짐.